

제 3 장 사 채

제14조 (사채의 발행) <신설 2012. 3. 23.>

-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4조의2 (전환사채의 발행) <본조 이동 2012. 3. 23.>

-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10. 21.>
 1.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 2.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3.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<개정 2006. 3. 24.>
 4.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5.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<개정 2009. 3. 13.>
 6.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한 일반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총수는 미발행주식총수 범위내이어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

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
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이사회가 정한다. <개정 2003. 10. 21.>

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⑥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<삭제 1998. 8. 28.>

제15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
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10. 21.>

1.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2.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3.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<개정 2006. 3. 24.>
4.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5.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<개정 2009. 3. 13.>
6.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한 일반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총수는 미발행주식총수 범위내이어야 한다.

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
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<개정 2003. 10. 21.>

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⑥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<삭제 1998. 8. 28.>

제15조의2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<신설 2019. 3. 27.>

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30.>

제16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<개정 2019. 3. 27.>

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